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89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공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·유통하고,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의 지원을 위해,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2023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
- 관련법령
 - 법률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조례 :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
-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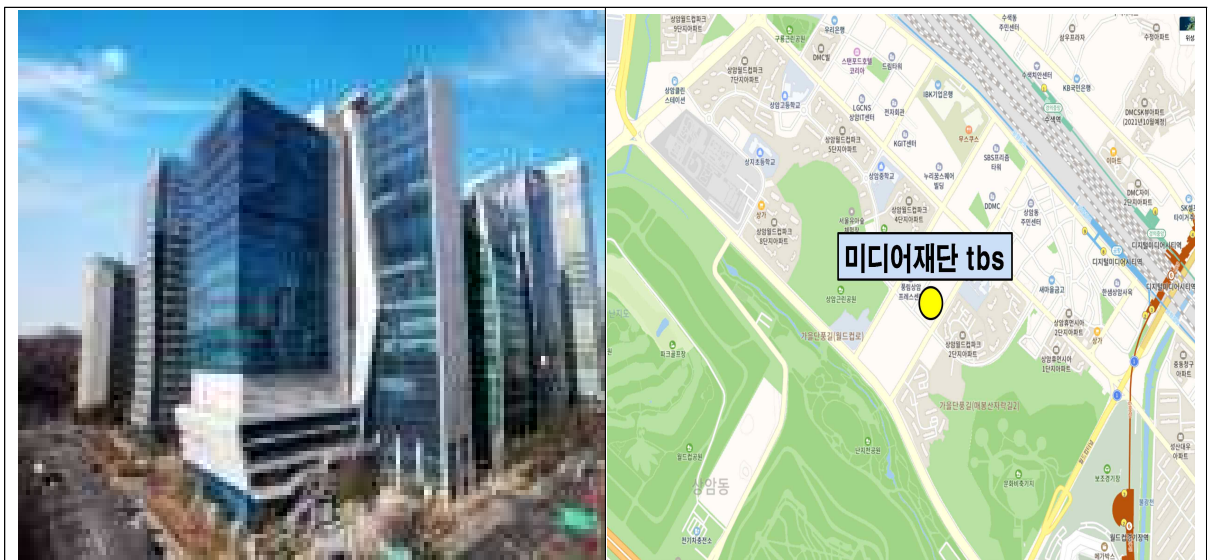
-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
-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
-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·협력
-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·협찬 등 수익 사업
-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다. 추가경정예산 개요

- 추경예산(증액) : 7,329,721천원
 - 총 출연금액 : 30,547,029천원(기 출연금 23,217,308천원)
- 출연 필요성
 -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경영혁신 및 기관운영 정상화 지원

라. 기관현황
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(에스플렉스센터)
- 규모 : 22,155 m^2 (약 6,714평)
- 전경 및 위치도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홍보담당관 방송홍보팀 윤성원 (☎2133-6442)

붙 임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추가경정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부사업	'23년 추경예산(출연금 증액)
총 계		7,329,721
사업비 계		4,274,974
전략 기획실	소계	598,790
	미디어 정책 기획 및 대외협력	95,000
	콘텐츠 편성 및 평가	299,750
	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운영	165,530
	매체 홍보 및 시민협력 추진	38,510
라디오 제작본부	소계	1,784,135
	FM 방송제작 및 운영	1,312,829
	eFM 방송제작 및 운영	471,306
TV 제작본부	소계	1,189,934
	TV 방송제작 및 운영	1,189,934
보도본부	소계	150,590
	보도방송 제작	150,590
방송기술 본부	소계	551,525
	방송장비 유지관리	261,442
	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	290,083
행정운영비 계		3,054,747
행정운영 경비	인건비	2,931,635
	기본경비	123,112

※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